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
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동영 (통일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6·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납북된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납북자가족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「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384호, 2026.2.27. 공포, 2026.8.28. 시행)됨에 따라,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·홍보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단체의 사업) 법 제12조 제4항 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관한 자료의 수집·보존·관리
2.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교육·전시 및 자
료집의 발간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5조의2(단체의 사업) 법 제12조 제4항 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관한 자료의 수집·보존·관리</u> <u>2.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교육·전시 및 자료집의 발간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5914